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39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전승환, 김유채, 서가임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45,210,578원 및 그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8.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565,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나. 74,109,006원 및 그 중 69,512,427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05,6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다. 154,804,137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7.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8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라. 89,921,338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8.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00,8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12. 11. 접수 제5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대출금 채무를 아래와 같은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액	보증인	보증한도액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1. 8.	1,300,000,000원	B	565,000,000원
2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6. 4. 29.	88,000,000원	B	105,600,000원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5. 4.	150,000,000원	B	180,000,000원
4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7. 9. 22.	420,000,000원	B	100,800,000원

나. 피고 A는 2018. 8. 29.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였고, 2019. 5. 27. 기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는 아래와 같다(단, ‘미수이자’란 기재 미수이자는 2019. 5. 26.까지의 것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총합	이율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1. 8.	1,300,000,000	45,210,578	1,345,210,578	8.12%
2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6. 4. 29.	69,512,427	4,596,579	74,109,006	11%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5. 4.	150,000,000	4,804,137	154,804,137	7.52%
4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7. 9. 22.	84,000,000	5,921,338	89,921,338	8.53%
합계			1,603,512,427	60,532,632	1,664,045,059	

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지배인인 D은 2018. 10. 11. 피고 B과 사이에,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을 포함한 피고 A의 채무를 2,418,454,232원으로 보아 위와 같은 채무 중 20억 원을 D이 부담하는(나머지 418,454,232원을 피고 B이 부담) 조건으로1) D이 피고 A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1. 29. 피고 C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12. 11. 접수 제5238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1,345,210,578원 및 그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연 8.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565,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74,109,006원 및 그 중 69,512,427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05,6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③ 154,804,137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연 7.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④ 89,921,338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연 8.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00,8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A가 외상매출채권 1,085,053,873원 상당, 재고재산 599,897,247원(상품 94,075,260원, 제품 298,975,400원, 원재료 206,846,587원) 상당, 차량운반구 13,883,818원 상당, 시설장치 46,971,634원 상당,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피고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게 되면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지배인 D이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A의 채무 2,418,454,232원 중 2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 A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A의 채무 41,329,533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김원목, 판사 김희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42.5㎡ 끝.

1) D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피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할 양도대금을 정하였다거나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D은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A의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